



기러기 아빠의 세금신고(4)

- 캐나다 사회보장혜택

질문

H씨는 2010년 1월부터 배우자 및 한 명의 자녀와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영주권을 신청해서 2013년 12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그 이전인 2012년 1월에 둘째 아이를 캐나다에서 출산했습니다.

H씨와 배우자는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어서 정착시 가져온 자금과 부모의 도움으로 절약하며 생활했습니다. 캐나다에 온 이후 처음으로 소득이 생긴 것은 직장에 취직한 2015년 2월인데 비로소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없고 유학생 신분이어서 세금 신고에 관심이 없었던 H씨는 이웃으로부터 세금 신고를 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혜택(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학생 신분이었던 H씨가 세금 신고를 하면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H씨는 어떤 종류의 사회보장혜택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회보장혜택의 종류 및 자격 요건

캐나다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는 내야 할 세금이 있을 때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저소득자인 거주자가 세금신고를 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캐나다에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는 필요한 도움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캐나다 연방정부가 운용하는 주요한 사회보장혜택과 이에 대한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웃값이라 불리는 CCTB(Canada child tax benefit)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거주자는 캐나다에 도착한 시점부터, 이외의 거주자는 캐나다에 도착 후 18개월 이상 거주한 시점부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둘째,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CCTB를 받는 부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할 때 받게 됩니다. 자격요건이 CCTB와 같으므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도 캐나다에 18개월 이상 거주하면 UCC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GST/HST credit은 캐나다 거주자로 19세 이상이면 캐나다 거주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CCTB가 이민법상 신분예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지만 GST/HST credit은 이러한 차등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넷째,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9세 이상의 저소득 거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WITB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하므로 캐나다에 도착한 연도와 떠난 연도의 일부 기간 거주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연방정부에서 운용하는 주요한 사회보장혜택의 종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 혜택 종류	CCTB(Canada child tax benefit)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	GST/HST credit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
자격 요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인 거주자 또는 18개 월 이상 캐나다에 거 주하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개인	CCTB 수령 자격이 있는 개인	19세 이상인 캐나다 거주자	19세 이상인 캐나다 거주자로 근로 또 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수령 금액 계산 방법	자녀수와 가구 소득 (Family income)에 따 라 차등 지급함	소득 수준과 관계없 이 자녀당 매월 \$60 또는 \$160을 지급함	자녀 수와 가구 소득 (Family income)에 따라 차등 지급함	자녀 수와 가구 소득 (Family income)에 따라 차등 지급함
신청 방법	RC66 양식을 통해 신 청함	CCTB 신청과 동일함	개인소득세 신고시 신청함(캐나다에 도 착한 연도는 RC151 양식을 통해 신청)	개인소득세 신고시 신청함
비고	2016년 7월 1일 이후 CCTB와 UCCB가 CCB(Canada child benefit)로 통합되었음			

2) H씨의 사회 보장혜택 수령 여부 판단

H씨는 캐나다에 도착해 일상적으로 살기 시작한 2010년 1월부터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BC주에 살고 있는 H씨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사회보장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CTB는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캐나다에 18개월 이상 거주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캐나다 거주 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하는 2011년 7월경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H씨의 소득수준에 따라 두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CCTB 금액은 매년 \$7,000가량입니다.

둘째, UCCB는 CCTB와 동일한 자격요건에 따라 받게 되므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2011년 7월부터,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태어난 시점인 2012년 1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UCCB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당 매월 \$160씩 지급되므로 연간 \$3,840을 받게 됩니다.

셋째, GST/HST credit 은 H씨가 캐나다 거주자가 된 2010년 1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GST/HST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 2008

년 및 2009년의 소득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H씨가 받을 수 있는 GST/HST credit 금액은 매년 \$1,100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WITB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2015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WITB는 가구 소득이 \$28,000가량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H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H씨가 캐나다 거주자로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 종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혜택의 종류	자격 요건 판단	추정 금액
CCTB(Canada child tax benefit)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18개월 이상 거주한 시점인 2011년 7월부터 받을 수 있음	연간 \$7,000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	CCTB와 동일하게 2011년 7월부터 받을 수 있음	연간 \$3,840
GST/HST credit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인 2010년 1월부터 받을 수 있음	연간 \$1,100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	근로소득이 발생한 2015년부터 신청 자격이 있으나 소득 수준이 높아 받지 못함	없음

답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더라도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세금신고를 통해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H씨의 경우에는 캐나다에 살기 시작한 2010년 1월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시점부터 세금신고를 한다면 여러 종류의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됩니다.

H씨가 세금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은 종류별로 받는 시점과 금액이 달라지지만, 대략 연간 \$12,000가량으로 2010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50,000가량으로 계산됩니다. H씨는 과거연도 세금신고를 하고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